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6조(국가대표지도자 선발) ①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1. 감독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코치의 경우 5년이상)의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코치의 경우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장애인요트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패럴림픽대회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 06. 26.>
3. 장애인요트연맹에서 발급한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종목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 장애인 특수종목의 경우, 제16조 ①항 2호, 3호에 의거 종목별 가맹단체장의 추천에 의거 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한다.

③감독, 코치 이외에 트레이너를 둘 수 있다. <개정 '21.04.01.>

④패럴림픽대회(농아인올림픽 포함),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농아인아시아경기대회 포함), 유형별종합대회 등 종합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지도자(감독에 한함)는 해당 연맹의 추천에 의하되, 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지도자 선발기준표(별표 1)에 의거하여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단 패럴림픽대회의 경우 대회 대비 훈련개시 최소 3개월 전에 국가대표지도자(감독에 한함)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 06. 26.>

⑤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를 모두 포함)는 최종 선발 당시까지 성폭력관련 범죄경력(징계경력을 포함)이 없는 자 이어야 하고 최종 선발된 이후 장애인체육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후 7일 이내 이수확인서를 해당 장애인요트연맹(또는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1.04.01.>

[조항이동 '21.04.01.]

부 칙 (2021. 04. 0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 장애인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1.04.01.>

제3조(적용)①이 규정 제6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와 관련한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적용일 이전까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1.04.01.>

②이 규정 제10조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9. 6. 25. 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신설 '21.04.01.>

③이 규정 제10조제7호는 형법 제246조, 제247조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3. 4. 5. 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신설 '21.04.01.>